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4. 7 선고 2020가단617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3. 24.

판 결 선 고 2021. 4. 7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2019. 6. 14.자 양도한 시설물(비) 및 영업권에 대한 계약은 8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8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8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 이순형

별지